

면지

면지

LAPD 번역과 한국경찰에의 적용 가능성 검토

《研究陣》

연구위원 : 표 창 원(경찰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 강 기 택(경찰대학교 경찰학과 교수)
 : 김 남 현(경찰대학교 경찰학과 교수)
 : 김 재 민(경찰대학교 경찰학과 교수)
 : 한 종 욱(경찰대학교 경찰학과 교수)

목 차

제1장 서 론	1
제2장 LAPD 매뉴얼 개관	3
1. 의 의	3
2. 매뉴얼의 구성	3
제3장 한국경찰에의 적용가능성 검토	5
1. 매뉴얼의 정립과 실질적인 활용	5
2. 매뉴얼을 통한 경찰운영 기본원칙의 제사	7
3. 세부적인 경찰활동 기준의 제시	8
제4장 결 론	11

〈 번 역 문 〉

Los Angeles Police Department 2001 매뉴얼	
--	--

제1장 서론

1. 연구의 의의

기존의 비교경찰론적 연구 성과들은 대상 국가의 경찰법제, 조직이나 거시적인 경찰정책 등에 주목하는 경향을 보인다. 국가경찰제와 지방자치경찰제에 대한 비교연구의 성과들이 전자에 해당한다면 영어권 국가들이 성공한 경찰정책으로 제시하고 있는 지역사회경찰활동에 대한 일련의 연구 성과들이 후자의 대표적인 예라고 할 것이다.

한 국가의 경찰제도를 이해하고 그 이해의 결과물을 우리 경찰의 발전 가능성을 검토하는 시금석으로 삼는다는 것은 큰 의의를 갖는다. 특히 형사사법체계 전반에 대한 개혁의 기초를 유지하고 있는 최근의 정치적 상황 하에서 이러한 연구 방법들은 그 몫을 충실히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거리에서 활동하는 경찰관들은 지역사회경찰과 같은 조직의 비전이 제시하는 것과는 차원을 달리하는 복잡한 현장의 상황 속에 노출되어 있다. 경찰 개입의 필요성과 상당성에 대한 판단을 하는 데 있어서 경찰관들이 권한과 책임의 불일치라는 자조적 태도를 보이고 경찰 관리자들이 이러한 불일치를 해소하는 데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다면 비교경찰론적 연구를 포함한 모든 경찰 관련 연구 성과들이 그 의의를 상실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 연구는 기존의 비교경찰론적 연구 방법과의 차별화를 도모하면서 실무적인 원칙과 절차를 제시하는 데 그 의의를 두고 있다. 경찰관들이 현장에서 부딪히는 다양한 상황들을 처리하는 데 기준으로 삼는 매뉴얼(Department Manual)을 우리 경찰실무상의 용어에 적합하게 번역하는 과정을 거쳐 그 원칙 및 절차가 우리 경찰에 적용 가능한 것인가를 검토하고자 하는 것이다.

2.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1) 연구의 목적

이 연구를 통해 자치경찰제 하에서 도시형 경찰조직을 운영하고 있는 미국 경찰기관의 직원들이 준수하도록 법정되어 있는 원칙 및 절차들을 규명함으로써 법제도 개선을 위한 논리적, 실증적 근거를 구축하고자 한다. 특히, 우리 경찰법제 하에서 불비한 것으로 평가되는 구체적 경찰작용의 방법 및 법적 근거를 비교법적 차원에서 검토함으로써 우리 경찰실무편람의 규정 형식 및 내용 등이 경찰관의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증명하고자 한다.

2) 연구의 필요성

우리 경찰의 작용법과 관련하여서는 일반적 수권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가 중론임에도 불구하고 구체적 수권조항에 대한 입법론적 연구와 실천의지가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경향은 실무적으로 경찰관들의 소극적인 법집행 태도로 귀결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인권 보장을 전제로 한 강력한 법집행을 위해 사용되어야 할 예산이 낭비되는 폐단을 초래하게 되어서 법의 보호를 희망하는 다수의 담세자들에게 불이익이 돌아가는 결과를 낳는다. 법집행 공무원인 경찰관의 권한을 남용하지 않도록 장치하는 가운데 그들의 법집행 의지와 실천을 법으로써 보호할 필요성은 전술한 현실 개선의 필요성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며 이 연구의 필요성도 이로부터 출발하는 것이다.¹⁾

1) 이러한 연구 목적에 비추어 지나치게 세부적이고 지엽적인 부분의 경우 본문에서 번역을 생략하고 그 연번 및 제목만을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제5권(서무)의 경우 별도의 본문 표기 없이 목차로 대신한다.

제2장 LAPD 매뉴얼 개관

1. 의 의

매뉴얼(Department Manual)이란 “2이상의 경찰청 소속 부서와 관련된 현행 원칙, 절차 및 규칙의 집합체”(a composite of current policies, procedures, and rules pertaining to two or more Department Offices)²⁾로 정의된다.

이 연구의 대상이 되는 미국사회처럼 위법한 국가작용에 기한 손해배상의 사법부를 통한 청구가 일반화 된 초(超)소송(super-litigation)적 풍토의 사회 내에서 경찰작용의 법적 정당성 확보는 각 자치정부에 시급한 현안이다. 귀중한 지방예산이 불법한 경찰작용이 야기한 손해를 보전하는 데 사용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 때 경찰작용의 위법성 여부와 지방정부의 대위책임 유무를 판단하는 일차적 근거가 되는 것이 해당 경찰기관이 경찰관에게 적정하고 명확한 원칙과 기준을 제시하였느냐 하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소극적(negative)인 필요성들은 “경찰기관 소속 직원들의 행위에 지침”(guides to the actions of employees of the Department)이 되는 매뉴얼의 적극적 목적을 통해 달성되는 부수적인 효과로 볼 수 있다.

2. 매뉴얼의 구성

매뉴얼은 크게 다섯 개의 권(volume)으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제1권은 “운영원칙”(Policy)이라는 제목 아래 경찰청의 활동방향에 지침이 되는 목표(objectives)와 원칙들(principles)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목표 및 원칙들은 경찰 위원 회의(Board of Police Commissioners)와 경찰청장(Chief of Police)이 공동으로

2) Los Angeles Police Department, Los Angeles Police Department 2001 Manual, p.1.

결정하는 것이다.

둘째, 제2권은 “조직과 기능”(Organization and Functions)이다. 이 장에서는 경찰청의 조직구조를 개략적으로 제시하고 모든 부서(office), 부(bureau), 단(groups), 지역(areas), 과(divisions), 계(sections)의 책임과 임무 등을 정하게 된다.

셋째, 제3권은 “운영규칙과 절차”(Management Rules and Procedures)이다. 제3권은 경찰청의 행정 및 관리 기능에서 요구되는 기존 규칙 및 절차의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다.

넷째, 제4권은 “현장절차”(Line Procedures)라는 제목 아래 경찰청 직원이 일선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과정에 지침이 되는 세부적인 규칙과 절차들을 규정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제5권인 “서무”(Clerical Operations)에서는 경찰청이 이용하는 양식의 용도, 작성 및 배포방법 등이 설명되어 있다.

제3장 한국경찰에의 적용 가능성 검토

비교경찰 연구의 한계는 모든 국가가 특유의 역사적, 문화적 배경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발전시켜온 형사사법체계 내에서 역사적 소산으로서의 경찰 제도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할 것이다. 즉 한 나라의 경찰제도는 그 나라의 과거와 현재를 반영하는 척도이며 다른 나라 경찰제도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는 태도는 일반적으로 보아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

이 연구는 이러한 비교경찰론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외국 제도의 정체되지 않은 수용론을 폐기하고 하나의 외국 제도가 한국 경찰에 적용될 가능성이 있는지를 논리적으로 검토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1. 매뉴얼의 정립과 실질적인 활용

미국의 자치경찰기관들이 매뉴얼을 소속 직원들의 행위의 기준으로 삼고 있음은 전술한 바와 같다. 이러한 기준 제시의 목적을 실질적이고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매뉴얼의 작성보다는 그 활용방안을 정립하는 것이 더욱 절실하다고 하겠다.

1) 매뉴얼의 관리

매뉴얼은 사본을 제작하고 그 사본을 행정·지휘부서 및 기타 해당부서, 경찰관, 경찰청 근무자가 반복하여 매뉴얼을 참조할 필요가 있는 데스크에 배포하여 실질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한다.

이 때 매뉴얼의 관리책임은 해당 부서 지휘관(commanding officers)에게 있으며 이들은 관할하는 부서(office), 국(bureau), 지역(Area), 과(division)에 배포된 매뉴얼 사본을 유지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경감(captain) 이하(below)의 경찰관은 개인용 매뉴얼 사본을 지급받는다. 이 때 해당년도 사본 지급 시점에 특별지시(special orders)를 통해 내용이 변경된 경우 이를 가제하여야 하고 지급된 매뉴얼은 항상 사용가능한 상태를 유지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2) 매뉴얼의 개정

매뉴얼의 개정은 경찰청장의 심의 및 승인사항이며 만약 이러한 매뉴얼의 개정안이 일반적인 운영원칙(general policy)에 관한 내용인 경우에는 경찰위원 회의(Board of Police Commissioners)의 심의 및 승인이 필요하다.

매뉴얼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경찰청 소속 직원 누구라도 자신의 지휘계통을 따라 부장급 지휘관에게 이를 전달할 수 있다. 부장급 지휘관의 승인을 얻은 개정요청은 관리단장에게 전달되며 승인을 얻게 되며 이는 다시 관리업무과장에게 전달된다. 관리업무과장은 개정요청에 대한 연구, 개선을 거친 후 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 특별지시(special orders)의 형식으로 개정을 하게 되는 것이다.

개정 발의의 주제에 제한이 없으며 특별지시의 형식으로 개정된 내용을 즉시 실무에 반영할 수 있는 절차는 특히 가변적인 경찰환경에 원활하게 대응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는 것으로 평가된다.

3) 기능별 매뉴얼(functional manuals)의 작성 및 활용

LA 경찰청(Los Angeles Police Department : 이하 LAPD)은 경찰청 내부적으로 다양한 전문분야에 따른 통일적인 지침을 정립하기 위해 다수의 기능별 매뉴얼을 제작하여 활용하고 있다. 시간기록(timekeeping)지침, 형사활동지침, 소년사건지침 등을 망라하는 세부적인 기능별 매뉴얼은 해당 매뉴얼의 주제와 관련된 부서의 소관 기능에서 그 유지 및 관리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기능별 매뉴얼 관련 부책 부장급 지휘관은 해당 기능별 매뉴얼의 갱신의 승인, 유지,

배포 등에 관하여 책임을 진다. 경신의 경우 경찰청 근무자들이 관련 주제에 대해 최신의 지침이 어떤 것인지 확인 가능하도록 이를 행하여야 한다. 경찰청장은 새로운 매뉴얼의 제정을 승인하여야 한다. 단, 매뉴얼이 승인되면 기능별 매뉴얼의 개정을 승인할 책임은 부장급 지휘관들이 진다.

2. 매뉴얼을 통한 경찰운영 기본원칙의 제시

LAPD 매뉴얼은 경찰의 목표, 개인행동의 준칙, 지역사회관계, 법집행활동의 준칙 등 경찰관이라면 누구나 숙지해야 할 기본 원칙들을 1권에서 제시하고 있다.

1) 목표의 제시

목표는 경찰청이 표방하는 모토(motto)로 시작해서 경찰의 이상(vision)이 '범죄와 무질서가 없는 시를 건설하는 것'임을 확인하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 경찰의 임무(mission)임을 선언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하고 있다.

덧붙여 매뉴얼은 LAPD가 추구하는 핵심 가치들(core values)로서 지역사회에 대한 봉사, 법의 존중, 인간 존중 등을 열거하고, 범죄 예방이 조직의 최우선 과제임을 표방함으로써 모든 경찰관들에게 몸담고 있는 조직의 목표와 가치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2) 개인행동의 준칙

매뉴얼은 서문에 경찰윤리헌장을 두고 있다. 제1권에서는 다시 경찰윤리헌장의 정신을 확인하고 경찰청 소속 직원 개개인이 어떠한 윤리 기준을 준수해야 할 것인가를 총론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타인에 대한 존중, 충성심, 청렴성 등 경찰관이라면 누구나 지켜야 할 개인행동의 덕목들을 열거하면서 각각의 내용들을 적시함으로써 경찰관을 포함한 경찰청 소속 직원들이 자신의 행동을 결정하는 데 지침으로 삼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3) 경찰관 직무 수행의 준칙

매뉴얼은 이어서 경찰청이 그 운영철학으로 채택하고 있는 지역사회경찰활동을 실현하기 위해 요구되는 지역사회관계 및 지역사회활동에 대한 기준들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는 지역주민 개개인에 대한 존중과 이를 위해 필요한 법집행의 공정성 등과 함께 지역사회활동의 일환으로 이해되는 대언론관계 및 공보활동의 원칙 등도 포함된다.

한편, 매뉴얼은 전통적인 경찰업무인 법집행활동의 원칙도 제1권에서 총론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출동요청의 접수, 초동수사, 현장 지휘책임, 계속수사 등 경찰의 법집행활동의 단계별로 매뉴얼의 본문에서 설명되고 있는 각론적 규정들에 우선 적용되는 원론적인 지침들이 그 내용을 구성하고 있는 것이다.

3. 세부적인 경찰활동 기준의 제시

LAPD 매뉴얼은 전술한 구성에 입각하여 세부적인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LAPD 매뉴얼 중 현장에서 활동하는 각 경찰관들의 법집행활동에 관한 원칙과 절차들은 제1권에서 그 총칙적·선언적 규정들을, 제4권에서 각칙적·실무적 규정들을 마련해 두고 있는 것이다.

1) 총칙적·선언적 규정

- 임무의 성격
- 적법한 경찰 작용
- 체포, 입건, 지속적 구금의 대안들
- 시민의 요청에 의한 활동
- 초동수사
- 혐오범죄 관련 사건 보고
- 민사 문제
- 현장 지휘
- 경찰 작용 상황에서의 지휘 책임
- 범죄 현장 감독
- 계속 수사
- 망원
- 비밀활동 수사관의 행동
- 기자 가장 비밀활동 수사관
- 폭동 예상 상황에서의 조치
- 학교 교정 내에서의 경찰 활동
- 성직자 접촉 시 요령
- 추격 요령
- 총기 사용
- 인질
- 무기 포기 투항상황에서의 경찰관
- 바리케이드 설치 용의자
- 경찰건 사용
- 최루용품의 사용
- 비살상용 통제도구의 사용
- 위험도가 높은 용의자를 엿드리게 한 상황에서의 수색
- 범죄 예상 시 경력 배치
- 계획된 체포·수색 영장 집행시 정복 경찰관
- 교통 단속
- 풍속 관련 단속
- 마약 단속

제1권의 총칙 규정은 다음과 같은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어서 경찰관의 법집행 활동의 주요한 주제들에 대한 선언적 내용들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총칙 규정들은 적극적 규정과 소극적 규정으로 대별될 수 있다. 전자는 경찰관이 법집행활동의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수행해야 할 임무를 규정하고 있는 규정들을 의미하고 후자는 회피하여야 할 행위 태양과 관련된 내용들이다. 예를 들어 “적법한 경찰 작용”, “초동 수사” 등이 경찰관이 해당 상황 하에서 원칙적으로 행해야 할 행동들을 적극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인데 반해 “민사문제”, “기자 가장 비밀활동 경찰관” 등은 절대적으로 금해야 할 행위유형들을 제시하고 있는 규정들이다.

2) 각론적 · 실무적 규정

제4권에서는 경찰관의 현장활동에 관한 총칙, 교통단속 및 교통사고 관련 업무, 입건 · 영치 등의 절차, 계속수사(on-going investigation) 등으로 구분하고 각각의 세부적인 원칙 및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다. 경찰관들은 전술한 배포원칙에 의해 배포된 매뉴얼에 규정된 이러한 내용들에 따라 세부적인 절차를 수행하면 되는 것이다.

이러한 각론 부분은 “현장 절차”(Line Procedure)라는 제목 아래 ① 통신 ② 현장활동 ③ 교통관리 ④ 교통사고 ⑤ 입건, 구급 및 재물의 처리 ⑥ 입건, 등재 및 피감호인의 구급 ⑦ 계속수사 ⑧ 외부경찰기관과 관련된 업무 등으로 색인번호를 달리 하여 규정되어 있다.

각각의 규정들은 계선절차 상 준수해야 할 원칙과 업무의 절차 및 기한 등을 명시적으로 제시함으로써 경찰관들이 업무의 준칙으로 삼을 수 있는 규정 형식을 취하고 있다.

제4장 결 론

LAPD 매뉴얼은 우리 경찰의 경찰업무편람과 유사한 측면을 가진다. 최근에는 우리 경찰에도 매뉴얼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서 다양한 상황에 관련된 매뉴얼의 편찬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기도 하다. 이러한 일련의 제도와 새로운 경향들은 우리 경찰이 결여하고 있는 정형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경찰작용의 정형성을 확보하기 위한 LAPD의 매뉴얼 상의 규정들과 그 활용 실태는 우리 경찰에 시사하는 바 큰 것으로 생각된다. 이번 연구가 외국 규정의 번역이라는 기술적인 성격이 강한 연구인만큼 앞으로의 과제는 연구 성과를 어떠한 시각에서 활용해 나갈 수 있을 것인가에 초점이 모아져야 할 것이다.

먼저, 일선에서 활동하는 경찰관들이 준수해야 할 원칙과 절차가 어떤 형태로 규정되어야 할 것인가를 제시하는 모델을 찾는 데 있어서 오랜 시간에 걸쳐 정립되어온 외국 경찰기관의 매뉴얼은 그 의의가 크다.

매뉴얼의 구조가 어떠한지 그 규정 형식은 어떠한가라는 기술적 문제에 착안하여 LAPD 매뉴얼을 살펴볼 때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에 접근 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자치경찰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미국 자치경찰기관의 하나인 LAPD의 운영 형식을 엿볼 수 있다.

경찰위원 회의가 경찰청장과의 관계에서 어떠한 권한과 책임을 분점하고 있는지, 하나의 자치경찰조직이 다른 자치정부의 기관들과 어떠한 관계를 형성하며 운영되고 있는지 등에 주안점을 두고 LAPD 매뉴얼을 살펴볼 수 있다는 것이다.

셋째, 실무적으로 우리가 채용할 수 있는 경찰활동의 준칙과 절차들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 및 검토도 병행되어야 한다.

대륙법계와 영미법계가 상호 수렴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는 법현실을 감안할 때 영미법계 국가의 경찰기관이 채택하고 있는 법제도들이 우리의 현실에 비추어 어떠한 의미를 가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선행적 연구의 필요성은 어느 때보다 크다고 할 수 있다. 대륙법계 경찰법제 하에서 고려되지 않고 있는 경찰활동의 준칙들을 살펴보고 양 법계의 수렴현상에 따라 우리경찰이 미리 그 도입 가능성을 검토해야 할 원칙과 절차들

은 없는지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이상의 제도론적, 법적 관점을 견지하면서 LAPD 매뉴얼을 한국 경찰의 필요성에 입각하여 조명하는 것에 이 연구의 최종적 의의가 주어진다고 하겠다.

Los Angeles Police Department

2001 매뉴얼

경찰윤리헌장

“경찰관으로서 나의 기본적인 임무는 인류에 대한 봉사 즉,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기망으로부터 무고한 사람을, 억압과 공포로부터 약자를, 폭력과 무질서로부터 평화를 보호하는 것이며 자유, 평등, 정의라는 개인의 헌법적 권리들을 존중하는 것이다.

나는 타인에 모범이 되도록 사생활에 물의가 없도록 할 것이고 위험, 냉소, 조소 앞에서 의연히 침착성을 지킬 것이며, 항상 다른 이들의 이익을 먼저 생각할 것이다. 나는 공사 불문하고 생각과 행동에 정직함으로써 자치법규와 소속 경찰기관의 법과 규칙을 준수하는 데 본보기가 될 것이다. 나는 공적인 비밀이 직무상 공개가 요구되는 경우가 아닌 한 지극한 비밀에 대해 보안을 유지할 것이다.

나는 사적으로 일을 처리하거나 사감, 편견, 증오심, 우정 등이 직무상 결정에 개입되지 않도록 할 것이다. 나는 범죄와 범죄인의 처벌에 있어서는 추호의 양보나 주저함은 물론 공포나 호의, 증오나 악의가 개입됨이 없이 정중하고도 적절하게 법을 집행할 것이며 과도한 공권력 또는 폭력을 사용하지 않을 것이고 사례를 받지 않을 것이다.

나는 내 배지를 공공의 신뢰의 상징으로 인식하고 내가 경찰복무헌장에 충실한 한 시민들이 나를 신뢰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것이다. 나는 끊임없이 이상의 목적들과 이상을 추구할 것이며 하나님 앞에 내가 스스로 선택한 직업인 경찰에 헌신할 것이다.”

특별명령 및 행정명령

특별명령(연번)	날짜	제 목
1	00.1.5	총기의 압수와 반환
2	00.1.7	Behavioral Science Services에 대한 질의회시 절차(개정)
3	00.1.14	매뉴얼 중 개정 세칙
4	00.1.27	비상응급후송 절차(개정)
5	00.1.28	범죄피해자의 관련 정보 보안요청(개정)
6	00.1.31	위기관리과-신설
7	00.2.14	지역회의의 보고
8	00.2.24	고소고발 보고절차(개정)
9	00.3.3	교육관련 발간물 영수증 서식(개정)
10	00.3.29	입건 승인 및 피체포자 검사
11	00.3.31	Cal/Gang 시스템의 작동 및 Gang 파일 관련 규칙
12	00.5.26	폭발물 등록(개정)
13	00.5.30	고소 양식
14	00.7.17	영장발부 관할 밖에서의 중범 체포
15	00.7.24	신설된 비상작전 규칙
16	00.7.24	경찰관, 자동차관리사업국, 법원직원의 구도 통지
17	00.8.7	캘리포니아 자동차법 31조
18	00.8.10	소환장의 접수와 이의 절차
19	00.8.15	차량 압류 절차(개정)
20	00.8.25	자동차 이용 폭행사범의 보고절차
21	00.8.31	학교 교정 내에서의 경찰작동
22	00.9.13	매뉴얼 세칙 개정
23	00.9.22	기소 가능한 범죄 혐의로 억류·체포된 우리 경찰관 기타 고용인
24	00.9.29	법률 자문 기타 법률 정보의 요청
25	00.10.14	교정위원회에 대한 사망 통보
26	00.10.23	고소 관련 정보 보고 양식
27	00.11.21	영화촬영 등 장소 점검을 위한 규칙
28	00.12.19	행불청소년 처리 절차
29	00.12.22	예비역 경찰관 기간 만료 통지
4	01.2.9	부서 폐지 관련 서식
5	01.2.9	Inspector General 관련 시책 및 권한 관계

행정명령(연번)	날짜	제 목
1	00.2.9	행정 전보
2	00.2.16	사명, 임무와 핵심 가치
3	00.3.6	Special Enforcement Unit의 가동
5	00.3.31	Gang 범죄 추적 및 분석
14	00.10.16	지역사회 관계활동 지출 기금
15	00.11.15	행정 이의 청문 절차
16	00.11.30	기부의 접수

